11.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사고의 법규해설 및 관련판례

법률관계 및 성립요건

행위주체	자동차의 운전자
행위내용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에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한 경우
고 의	반드시 고의로 위반할 것은 요구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
인과관계	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항목	내용	예외사항
장소적 요건	앞지르기 금지장소	앞지르기 금지장소 외 지역
피해자적 요건	앞차가 뒷차의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으로 충돌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 나. 불가항력 만부득이한 상황에서 앞지르기하던 차량에 의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적 요건	**가. 앞지르기 금지위반 행위** 1. 앞차가 앞지르기하거나 앞지르기하고자 하는 때 2. 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서행하고 있는 때 3.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7개장소) 4. 중앙선 황색실선 침범하여 앞지르기 **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 1. 우측 앞지르기 2. 2개차선 사이로 앞지르기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시설물의 설치 요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한 안전표지 중 규제표지 일련번호 213호(앞지르기금지표지)	특정 구역내에 개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시설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된다.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는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사고가 아니라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 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해하여야 한다. 또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 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2항)

+

◎ 앞지르기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제3항)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60조 제2항)

앞지르기의 금지

◎ 앞지르기의 금지시기(도교법 제22조 제1항, 2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
2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앞지르기의 금지장소(도교법 제22조 제3항)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끼어들기 금지(도교법 제2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앞지르기 위반에 따른 처벌내용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 한다.

▶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사고사례
° 커브 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 나란히 병진하던 중 앞지르기,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재차 앞지르기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황색실선이든, 점선이든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침범처리 ° 앞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 두 개차선 사이로 앞지르기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고사례
° 주정차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 중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앞지르기 위반 관련판례

판결요지	사건번호
편도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된다.	대법원 97도927 판결
고속도로 상에서 추석귀성차량 때문에 반대차선이 지체되었다 하여도 반대차선의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 할 것 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하는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 94다10504 판결

전방에 중앙선을 타고가는 자전거를 추월진행타가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기위해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진행차의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89도 2218 판결
황색점선 중앙선의 경우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고 반대방향에 주의하며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차선에 따른 진행으로 본다.	대법원 89도 1792 판결
커브길에서 대향차가 앞지르기하여 중앙선침범 진행할 때 반대방향차가 이를 대처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대법원 87다카 2331 판결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 중앙선 침범 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87도 581 판결
편도1차선 도로 전방 택시 추월 진행타 대향차가 이를 보고 좌로 피하고 추월진행차 본 차선 진입하여 사고야기시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대법원 86도 2597 판결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코져 추월선 진입 주행 중 장애물이 있어 사고가 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6도 239 판결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뒷차에 대해 앞차운전수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 1959 판결
편도 1차선도로의 맞은편 70m 전방에 경운기를 앞지르고자 중앙선 침범한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고속버스가 뒤늦게 10m 전방에서 피하려고 급제동했으나 충돌한 경우 고속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위해선 속력과 거리, 시간이 정확하게 심리되어야 한다.	대법원 85도 1952 판결
앞서가던 버스가 일시 정차하여 진로를 막은 경우 이를 피해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대법원 85도 1264 판결
추월버스를 피해 급제동한 결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한 것을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5도 83 판결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코져 중앙선침범 진행하던 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4도 2923 판결
2개 차선 진행차량 사이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야기 된 경우 앞지르기 차량이 사고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84도 864 판결